

대학 평의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07. 01. 15.

제11차 개정 2020. 11. 06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(이하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 9에 따른 대학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. (개정 2007.11.12) (각 호 개정 2007.11.12)

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
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7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구성 및 자격)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 5명
2. 직원 2명
3. 조교 1명
4. 학생 2명
5.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사람 1명(개정 2020.11.06.)
- ② 교원 평의원은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.(개정 2020.11.06.)
- ③ 직원 평의원은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.(개정 2020.11.06.)
- ④ 조교 평의원은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.(개정 2020.11.06.)
- ⑤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.(개정 2020.11.06.)
- ⑥ 제3조 제1항 5호의 경우 법인이나 상지대학교에 재직중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.(신설 2020.11.06.)
- ⑦ 교원 평의원, 직원 평의원, 조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 1. 휴직 및 퇴직
 2.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
 3.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및 연구교수
- ⑧ 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학 및 졸업
2.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
3.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[전부개정 2020.03.09.]
- ⑨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(항신설 2020.11.06.)
 1. 학교법인 상지학원 또는 상지대학교에 재직하게 되는 경우
 2. 학교법인 상지학원 또는 상지대학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인 경우

제4조(추천 및 위촉) ① 교원 평의원은 과반수 교수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② 직원 평의원은 교섭대표 노동조합(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)이나 직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조교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(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학생중앙운영위원회)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- ⑤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20.11.06.)
- ⑥ 추천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단위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접 평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.
[전부개정 2020.03.09.]

제5조(의장 등) ① 평의원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
-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-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- ④ 평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임기)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(개정 2020.06.11.)

-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③ 평의원의 임기 만료 시 또는 결원 발생 시에는 임기만료 30일전 또는 결원발생 30일 이내에 제4조의 절차에 따라 후임 평의원을 선출한다.

제3장 회의

제7조(회의) ① 평의원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.

1. 정기회의 : 학기별 1회
2. 임시회의 : 총장의 요청 시,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평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5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03.19.)
- ③ 평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. (개정 2018.03.19.)
- ④ 평의회 의장은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

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03.19.)

제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

제8조(개방이사 추천) 법인으로 부터 정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7.11.12)

제9조(개방이사 후보자) ① 개방이사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. (개정 2007.11.12)

② 개방이사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,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, 추천 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 (개정 2007.11.12)

③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(개정 2007.11.12)

제10조(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)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**사람이어야** 한다.(개정 2020.11.06.)

제11조(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) ①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정관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(개정 2007.11.12)

② 잔여 위원은 평의원 중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시마다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 (개정 2007.11.12)

제12조(개방감사 추천) 개방감사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서 단수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며 추천절차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(개정 2007.11.12., 2020.11.06.)

제5장 보칙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준용하며,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 (개정 2007.11.12)

제14조(지침 등)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(기획예산과-62, 2007.1.15)

이 규정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과-105, 2007.1.29)

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종전 예결산자문위원회 및 대학발전기획위원회 등에서 제2조(기능)을 수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과-758, 2007.7.12)

- 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0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최초 평의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최초 상지대학교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학년도말로 한다.

부칙(기획예산과-1195, 2007.11.13)

이 규정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과-524, 2008.4.22)

이 규정은 2008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과-1326, 2008.11.27)

이 규정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과-437,2015.07.22)

- 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규정 시행 이후 위촉된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말로 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446,2017.11.09)

- 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17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평의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평의원은 이 규정 시행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③ (평의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된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말일로 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146, 2018.3.19)

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164, 2020.3.9)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402, 2020.6.11.)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709, 2020.11.06.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평의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위촉된 평의원은 제3조 제6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 동안 평의원 자격을 유지한다.